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2. 1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2월 1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7년 12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132회 제2차정례회 제5차위원회 (2007. 12. 1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가. 제안이유

「정보통신의 발달로 행정서비스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인구 1만5천명 이하 동을 동일 생활권역 중심으로 인근 동과 통합하고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도모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 골자

- 1). 종전의 7개동(아현제1동, 아현제2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서교동, 동교동)을 3개동(공덕동, 아현동, 서교동)으로 조정함 (안 제2조 관련, 별표)

가) 동 통합

- (1) 아현1동 + 공덕1동 + 공덕2동 일부(11통, 12통) + 신공덕동 ⇒ 공덕동

(2) 아현2동 + 공덕2동 (11통,12통 제외) ⇒ 아현동

(3) 서교동 + 동교동 ⇒ 서교동

나) 통합 청사

(1) 공덕동 청사 : 現 공덕1동 청사(공덕동 29-6)

(2) 아현동 청사 : 現 공덕2동 청사(공덕동 458)

(3) 서교동 청사 : 서교동과 동교동 중간지점(서교동
445-3)

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새주소로 병행 표기 (안 제2조 관련, 별표)

3)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라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하고 명칭변경과 관련된 타 조례를 부칙조항에서 일괄
개정함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인구 2만명 이하 소규모 동을 3만명
이상 대동제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1만5천명 이하 동을 인근 동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한 행정동의
경계를 변경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동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주소와 현행주소를 병행 표기하였으며,
아현제1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일부(11,12통포함) 및 신공덕동을
공덕동으로, 아현제2동과 공덕제2동(11,12통제외)을 아현동으로,

서교동과 동교동을 서교동으로 통합하여 종전의 7개동을 3개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통합되는 동】 (면적, 세대수, 인구수 - 2007. 9. 30 기준)

○ 아현제1동(면적 0.33km², 인구 6,067세대 13,328명, 20개통), 공덕제1동(면적 0.32km², 인구 5,687세대 13,286명, 16개통)과 신공덕동(면적 0.26km², 인구 4,643세대 11,150명, 15개통) 및 공덕제2동 일부(면적 0.11km², 인구 713세대 1,625명, 11,12통)을 통합한 공덕동의 면적은 1.02km²이고 인구는 17,110세대에 39,389명으로 53개통이 되겠으며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현재 공덕제1동 주민센터인 만리재옛길 31(공덕동 29-6)이 되겠음.

○ 아현제2동(면적 0.45km², 인구 8,103세대 17,525명, 27개통)과 공덕제2동[면적 0.31km², 인구 4,974세대 11,750명, 16개통 (11,12통제외)]을 통합한 아현동의 면적은 0.76km²이고 인구는 13,077세대에 29,275명으로 43개통이 되겠으며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현재 공덕제2동 주민센터인 밤골길 14(공덕동 458)가 되겠음.

○ 서교동(면적 0.94km², 인구 9,007세대 17,952명, 23개통)과 동교동(면적 0.69km², 인구 6,997세대 12,578명, 18개통)을 통합한 서교동의 면적은 1.63km²이고 인구는 16,004세대에 30,530명으로 41개통이 되겠으며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서교로 53 (서교동445-3)이 되겠음.

<검토의견>

○ 지역개발과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여건이 변하여 비효율적인 지역관리와 인력운영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동 경계 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됨에 따라 능률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7. 1. 2자로 인구 1만명 내외의 소규모 동 4개를 통폐합하여 24개동에서 20개동으로 조정된 바 있으나 동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 시달된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인구 2만명 이하 소규모 동을 3만명 이상의 대동제로 추진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구관내 인구 1만5천명 이하 동을 인근 동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행정동의 경계가 조정된 동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통합으로 인한 혼란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민원 현황과 구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에 의하면 동 통합에 반대하는 다수의견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20개동 중 7개동을 3개동으로 조정함으로서 16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되는 임여인력 53명(5급 4명, 6급 8명, 7급이하 41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류인력이 발생하지 않고 동의 기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또한 폐지되는 동청사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판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